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19년 11월 13일
- 나. 발 의 자: 고기관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: 2019년 11월 20일
- 라. 상정일자: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19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고기관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여 통장 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,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‘목적’ 전문 개정과 ‘장학금의 지급대상’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까지로 확대 적용(안 제1조)
 - ‘장학금 대상자 선발’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(안 제5조)
 - ‘대학생 장학금’의 지급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 - 장학생의 의무를 삭제함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인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,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는 ‘장학금의 지급대상’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까지로 확대 적용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‘장학금 대상자 선발’ 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검토결과,
 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의 무상의무교육 확대실시(2019년 하반기 고3, 2020년 고2, 2021년 고1 예정)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,
 - 현대사회의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여 변화된 환경에 부합되도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있어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함으로써,
 -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재정비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,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기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1월 일

발의자 : 고기판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여 통장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, 법 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목적' 전문 개정과 '장학금의 지급대상'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까지로 확대 적용(안 제1조)
- 나. '장학금 대상자 선발'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(안 제5조)
- 다. '대학생 장학금'의 지급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- 라. 장학생의 의무를 삭제함(안 제10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법』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9. 11. 14 . ~ 11. 18.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의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**장학금**”을 “**통장자녀장학금**(이하 “**장학금**”이라 한다.)”으로 한다.

제5조(선발)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“**구청장**”을 “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**(이하 “**구청장**”이라 한다.)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

제6조 중 “**범위내**”를 “**범위**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(장학금)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	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의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.</p>	<p>제2조 (장학금의 종류) 통장자녀 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.)----- -----.</p>
<p>제5조 (선발)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 (선발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.)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</p>
<p>제6조 (장학생 정원) 장학생은 예산 범위내에서 정한다.</p>	<p>제6조 (장학생 정원) ----- ---범위-----.</p>
<p>제7조 (장학금)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</p>	<p>제7조 (장학금)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</p>

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안에서
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
있다.

제10조 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
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
되어야 하며, 새마을운동의 항
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
바지하여야 한다.

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
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
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
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
지급 할 수 있다.

<삭 제>